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업무」



이석기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업무부 과장

**대한** 설비건설공제조합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건설업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의거 2001년 9월 25일부터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분에 대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동 법령 및 규칙에 의거 건설업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등록 관청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법정기한내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취하시어, 동 확인서 미 제출로 인하여 건설업등록이 실효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발급대상 및 내용

1)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등 저회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건설업종을 등록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시는 분은 저회 조합의 신용평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2)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업종별 법정자본금(2억원)의 100분의 20내지 100분의 50범위내에서 현금을 예치(출자)하여야 합니다.

※ 이미 신용평가를 받은 조합원은 새로 받지 않아도 되며, 기 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예치(출자)한 것으로 간주하며, 부족한 금액만큼만 예치하면 됩니다.

## 2. 발급신청서류

- ① 보증가능금액확인신청서(붙임1)
- ② 예치서(붙임2)
- ③ 신용평가 관련서류

## 3. 예치(출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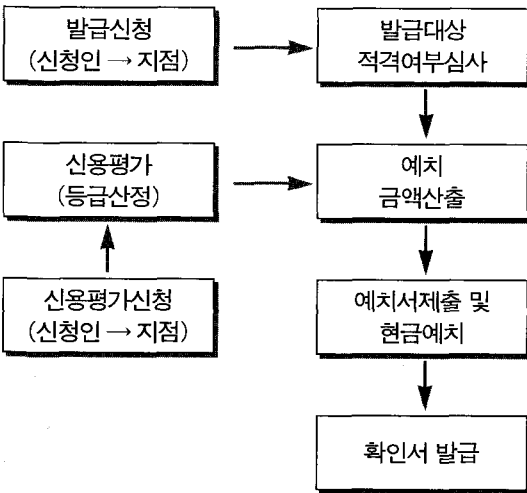
- 1) 조합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른 신용등급별 보증한도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법정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하며, 등록업종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업종별 예치(출자) 대상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보증가능금액(법정자본금 2억원)을 충족하기 위한 신용등급별 최소 예치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등급별 예치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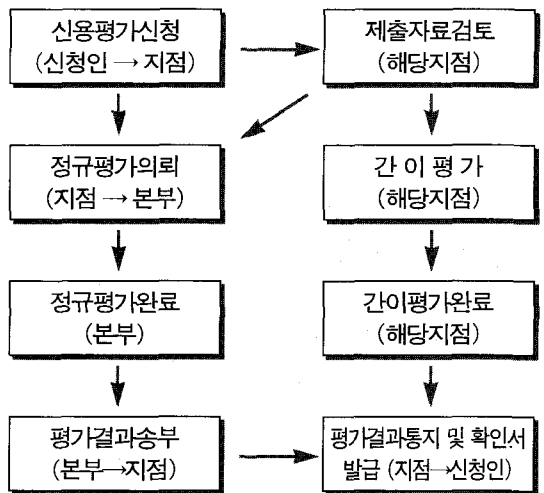
구분	AAA~CCC등급	CC등급	C등급
등급별 최소예치좌수	46좌	51좌	76좌
법정예치금액	41,278,100원	45,764,850원	68,198,600원
보증가능금액	2억원이상 (46좌×897,350×5.5배)	2억원이상 (51좌×897,350×4.5배)	2억원이상 (76좌×897,350×3배)

※ 법정예치금액은 지분가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확인서 발급절차



2) 신용평가 절차



1) 신용평가 방법

- ① 2개년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는 조합원은 정규 평가를 하여 신용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② 2개년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조합원, 비조합원 및 신규등록자는 약식평가방법에 의한 간이평가를 하여 신용등급 BB, B, CCC, CC, C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용평가 방법의 세부사항은 “신용평가업무 (www.seolbi.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발급제한

-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①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된 때
  - ② 금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 ③ 출자지분의 양도, 조합이 지분취득, 예치(출자)금 또는 출자증권의 압류집행 등으로 인하여 출자금예치 기준에 미달한 때
  - ④ 건설업을 양도한 때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⑤ 조합으로부터 제명되었을 때

- ⑥ 조합원의 권리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자 중 확인서 발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⑦ 기타 확인서 발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6. 유효기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따라서, 매년 유효기간 만료전에 조합의 새로운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만 건설업등록이 유지됩니다.

**7. 효력상실**

- ① 확인서 발급 이후 신청인이 상기 "5. 발급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②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조합은 이를 등록관청에 통보하게 되며,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8. 조합업무이용**

조합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 받아 건설업 등록을 하신 분은 조합 청약절차에 따라 예치금을 조합출자금으로 전환하신 후 조합이 정한 제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다음 업무거래(보증·융자 등)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 보증가능금액확인신청서

신	상	호	설비건설(주)	대 표 자	홍길동
청	영	업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000-00	
인	법	인	등	전	화
	등	등록	번호	번호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1(000-00-00000)		02-000-0000	
등	등록	관	청	000구청	
신	청	업	종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당사(본인)는 귀 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규칙" 의 제 조건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 조합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000-00

상    호: 설비건설(주)

대 표 자: 홍길동 (인)

전 화 번 호: 02-000-0000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귀중

붙임 2

# 예치서

(접수번호 : )

신 청 업 종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예 치 금 액	금사천사십구만일천팔백이십이원 (₩40,491,822)

당사(본인)는 건설산업기본법, 동법시행령과 조합정관 및 제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건하에 상기금액(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을 귀 조합에 예치(출자)합니다.

## 다 음

1. 당사의 귀책사유로 이 예치금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되어도 당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2. 예치(출자)금액은 당사의 신청업종에 대한 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환불신청 하되, 손해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청구나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당사가 신청업종에 대한 등록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등록증 또는 등록처분통지서를 교부받아 귀 조합에 제시하고, 조합 가입절차에 따라 귀 조합에 가입한다.
4. 예치(출자)후 조합가입시 좌당지분액과 예치(출자)시 좌당금액의 차액은 추가납부 또는 환불 받기로 한다.
5. 전항에 의한 추가납부의 경우, 그 차액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조합정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고 조합가입불허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한다.
6. 예치(출자) 후 주소,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귀 조합에 신고한다.
7. 기타 예치(출자)금의 처리에 관하여는 귀 조합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000-00

상 호: 설비건설(주)

대 표 자: 홍길동 (인)

전 화 번 호: 02-000-0000

- ※구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귀중